

파주시노인·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4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. 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문산읍에 설치된 다목적복지회관내의 독서실에 대한 주민 이용율이 적고 현재 시립도서관 3개소에서는 복사료만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독서실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목적복지회관내 독서실 사용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파주시노인·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중 현행 독서실 사용료(1일 입실료 1,500원 1개월 정기 입실료 35,000원)를 무료로 한다. (안 제12조)

파주시조례제 호

파주시노인·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노인·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사용료) 회관의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.

(별표)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파주시노인·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 제12조(사용료) ①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사용해야 한다. (별표)	파주시노인·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 제12조(사용료) 회관의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. (삭제) (삭제)